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제정 2015. 7.31 조례 제2101호
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18. 8.30 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일부개정 2019. 6. 25 조례 제2492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일부개정 2022. 8. 2 조례 제2868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50조제2항과 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광명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일반택시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 시 운송사업을 말한다.
- 2. "개인택시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을 말한다.
- 3. "택시운수종사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 이택시에 한정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한편,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.
 - 1.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, 운전자·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·안심서비스 강화,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 서 확립
 - 2.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,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
 - 3.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,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, 택시 디자인 개선

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

- 4.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,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 와 택시 인프라 확충
- 5.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5조(종합계획 수립)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 - 3.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시민, 운수사업자,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「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 사자 처우 개선,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.
 -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8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 명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1.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
- 2.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
- 4.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,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性(남성 혹은 여성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, 8, 2〉
 -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, 담당과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8. 7. 31, 2018. 8. 30〉
 - 1. 택시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식견과 전 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광명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
 -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 - 2. 위원이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
 - 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
 - 4.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

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-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- 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재정지원 사업)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2.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
 - 3. 운임, 요금결제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·개선사업
 - 4.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
 - 5.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
 - 6. 택시쉼터 지원 사업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- 제16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
- 2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- 3.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
- 4. 자기자본의 부담액
- 5. 보조사업 기간
- 6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7조(보조금의 지급결정)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 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.
 - 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
 - 2.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 - 3.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
 - 4.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(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)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-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 -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18조(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
 -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
 - 3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4. 시장이 경영상태,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5.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

자료를 제출한 경우

- 제19조(관리감독)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·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,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자료제출)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제21조(표창)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, 운송사업자, 시민,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,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※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9조제2항 중 "시민행복국장"을 "안전건설교통국장"으로 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19. 6. 25 조례 제2492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. 8. 2 조례 제2868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